의안 번호	108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7)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10.27.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0. 16. 창원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6.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7.)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시설 안전 재원 긴급 투입에 따른 인력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출연금 변경에 대하여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기 존	변 경	증 감
출 연 금	2,313,500	2,513,500	200,000

□ **(재)경남로봇랜드재단**

○ **설립목적**

-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 **설립근거**:「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제12조 및「경남로봇랜드재단 설립·운영 규약」제4조

○ **설 립 일**: 2002. 7. 19. (재)마산밸리, 2015. 1. 5. 현 명칭으로 변경

○ **소 재 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경남 마산로봇랜드 내

○ **조직/현원**: 1본부 10팀 138명(정원 74명, 현원 69명, 정원 외 69명)

○ **출연금 변경 사유**

- 2019년 테마파크 개장 이후 시설 노후화로 유기기구 고장 건수 증가
- 유기기구 고장 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부품 확보 및 긴급 사전 교체 필요
- 재단 자체 재원의 긴급 투입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분 보전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제12조(설립), 제19조(재원), 제20조(운영)

○ 「경남로봇랜드재단 설립·운영 규약」 제4조(설립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5.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전현주)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 2,513,500천 원

- (재)경남로봇랜드재단은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및 「경남로봇랜드재단 설립·운영 규약」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출연금을 기존 2,313,500천 원에서 200,000천 원(8.6%) 증액된 2,513,500천 원(약 25억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변경 사유는 2019년 테마파크 개장 이후 시설 노후화로 유기기구 고장이 증가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부품 확보 및 긴급 사전 교체에 재단 자체 재원을 긴급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려는 것임.
- 재단 조직은 1본부 10팀 138명이며, 이 중 파크운영 부문이 5팀 105명으로 전체 인력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 검토 사항

-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출연금 변경 사유를 보면 이번 증액의 실질적 원인은 테마파크 유기기구의 노후에 따른 시설 안전 투자임에도, 출연금 변경 동의 내역의 증감사유는 “인력운영비 부족분 확보”로 기재되어 있음.

- 재단이 인력운영비 재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이사회 의결과 회계규정에 따른 내부 예산 운용의 문제이나, 의회의 출연 동의는 시 재정의 추가 투입 목적과 필요성을 심의·의결하는 절차임. 따라서 출연금 증감사유는 실제 재원이 투입되는 목적에 부합하게 제시되어야 함. 증감사유를 인력운영비로 기재할 경우, 의회가 시설 투자 필요성과 규모를 적정하게 심사하기 어렵고, 정산 과정에서도 출연 목적과 실제 집행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 집행·후 보전' 방식이 관행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1]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로봇랜드 조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2]는 그 공익시설을 로봇 전시관, 로봇 경기장, 로봇 체험관, 로봇 교육시설,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과 이에 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로봇 전시관**
2. **로봇 경기장**
3. **로봇 체험관**
4. **로봇 교육시설**
5.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증액 요인인 테마파크 일반 유기기구(어트랙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공익시설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품 확보 및 교체 비용을 시가 직접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 동의안은 재단이 인력운영비를 유기기구 교체에 우선 사용한 후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보전하려는 구조로, 증감사유는 '인력운영비 부족분 확보'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비를 사후 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령상 지원 범위를 우회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집행부는 ① 교체 대상 유기기구가 로봇 체험관 등 공익시설 또는 장관 고시 시설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출연의 별도 법적 근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3] 등)와 그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동의안에는 긴급 투입한 재단 자체 재원의 규모와 교체 대상 유기기구 및 부품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동 설립 주체인 경상남도의 출연금 변경 여부와 분담 기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한편, 시 출연금 증액분을 인건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부족분 보전으로 제시하기보다 투입 부서·직종·인원·집행 기간·1인당 단가 등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인력이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운영에 종사하는 인력인지 명확히 하고, 신규 채용에 활용할 경우 재단의 정원 및 채용 계획과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 **종합 의견**

- 유기기구 노후화에 따른 이용객 안전 확보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본 출연증액은 명목상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공익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기구의 교체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집행부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과 재원 투입 내역, 인건비 산출 근거 및 경상남도와의 비용 분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한 검토한 필요함. 또한 향후 공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기구의 유지·보수 비용은 재단 운영수익 등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동의)**

9. 소수의견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